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9고정455 명예훼손
피 고 인 황상국 (000000-00000000), 000
주거 -삭제-
등록기준지 -삭제-
검 사 양재헌(기소), 김영민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윤승환
판 결 선 고 2020. 6. 12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

-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합니다-

2. 판단

-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합니다-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판사 정현수 _____